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라 확대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센터의 취급 품목을 반영하고, 미래폐자원과 관련한 재생원료 생산 원료 물질의 재활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규정 현행화(안 제10조)
- 나.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 등 신설(안 별표4, 별표 4의3)
- 다.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개정(안 별표 5)
- 라.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3)
- 마.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의 규정 현행화(안 별표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의3 중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같은 항에 따른 미래폐자원”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51-41-08란 다음에 “51-41-09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란을 신설한다.

별표 4의3 제2호의 51-41-08란 다음에 “51-41-0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41-09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R-2-1, R-2-2,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	---	--	-------

별표 5 제3호나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구동용 폐이차전지 및 전력저장 및 예비전

원용 폐이차전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가)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반차량에 적재한다. 다만, 불활성화된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절연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한다. 다만, 금속제 파렛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터리와 파렛트 간의 직접 접촉에 의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비전도성 절연매트 또는 패드를 배터리 바닥면에 부착한다.

(2) 배터리 간의 상호 접촉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격벽 구조 등의 내부 형태를 갖추거나 비전도성 난연 완충재로 채워진 고정식 덮개형 운송용기에 담는다.

나) 파렛트 또는 운송용기는 운반차량에 견고히 고정해야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구동용 폐이차전지 및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가)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보관창고 또는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한다. 다만, 불활성화된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절연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배터리의 보관장소는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다)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유해물질 유출에 대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배터리 상호 간의 물리적 접촉에 의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1) 배터리 상하 및 좌우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적재한다.

(2) 배터리 간의 상호 접촉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격벽 구조 등의 내부 형태를 갖추거나 비전도성 난연 완충재로 채워진 덮개 형 용기에 담는다.

별표 5 제4호가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리튬계 폐이차전지 및 그 밖의 폐이차전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가)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반차량에 적재한다. 다만, 불활성화된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절연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한다. 다만, 금속제 파렛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터리와 파렛트 간의 직접 접촉에 의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비전도성 절연매트 또는 패드를 배터리 바닥면에 부착한다.

(2) 배터리 간의 상호 접촉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격벽 구조

등의 내부 형태를 갖추거나 비전도성 난연 완충재로 채워진 고정식 덮개형 운송용기에 담는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파손 등으로 유해물질이 누출되었거나 유출된 경우 또는 그럴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반차량에 적재한다.

(1)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내화학적 및 내수성을 갖춘 밀폐형 운송용기에 담는다.

(2) 운반 차량에는 유해물질 유출에 대비하여 방제 장비(흡착포, 방제 장갑 등)를 비치한다.

다) 파렛트 또는 운송용기는 운반차량에 견고히 고정해야 한다.

별표 5 제4호나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리튬계 폐이차전지 및 그 밖의 폐이차전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가)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보관창고에 보관한다. 다만, 불활성화된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절연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배터리의 보관장소는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다)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유해물질 유출에 대비한 시설과 장비를 갖

취야 한다.

마) 배터리 상호 간의 물리적 접촉에 의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 (1) 배터리 상하 및 좌우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적재한다.
- (2) 배터리 간의 상호 접촉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격벽 구조 등의 내부 형태를 갖추거나 비전도성 난연 완충재로 채워진 용기에 담는다.

바) 마)에도 불구하고 파손 등으로 유해물질이 누출되었거나 유출된 배터리 또는 그럴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배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 (1)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내화학적 및 내수성을 갖춘 밀폐형 용기에 담는다.
- (2) 용기 보관장소 주변에는 유해물질 유출에 대비하여 방제 장비(흡착포, 방제 장갑 등)를 비치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5)(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또는 구동용 폐이차전지”를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구동용 폐이차전지 또는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로 하고, 같은 (5)의 (다)를 다음이 같이 하며, 같은 (5)의 (라) 중 “제품”을 “국내에서 제품”으로, “가공 공정”을 “가공 공정[소성(燒成)·건조 등 열처리 공정은 제외한다]”로 각각 한다.

(다) 재활용된 원료물질은 니켈과 코발트 함량의 합이 무게 비율로

13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니켈 및 코발트 함량은 한국 산업표준에 따른 분석 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석 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에 따른다.

별표 16 제17호 중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또는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미래폐자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 ----- ----- ----- -----.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u>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보관·재활용하는 경우</u>	10의3. ----- ----- ----- <u>같은 항에 따른 미래폐자원</u> ----- ----- -----
10의4. ~ 11. (생 략)	10의4. ~ 11. (현행과 같음)